**난민인권센터 모금 윤리 규정 제정 추진(안)**

1. **추진 배경**

* 난민인권센터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모금 사업의 중요성과 전문성 대두
* 직접 지원 서비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센 사업의 성격으로 모금사업의 지속·대안적인 전략 필요성 대두
* 투명하고 효과적인 모금 방법과 철학에 대한 이해관계자(대표, 운영위원회, 회원, 일시후원자, 난민, 활동가 등)의 고민 공유와 합의된 철학 및 규정 필요성 대두
* 단체 내 ‘빈곤의 포르노(Poverty Pornography)’에 대한 합의된 정의(기준)와 전략적 극복 대안 마련 계기 필요
* 모금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단체의 신뢰성 및 인지도 제고에 기여 필요성 인식

1. **추진 목적**

* 단체의 지속·대안·전략적 모금 사업 추진 기여
* 민주적 절차를 통한 모금의 투명·책무·효과성 기준의 마련으로 단체 신뢰도 및 전략적 가치 실현 대안 제고
* 모금현장에서의 윤리성 강화
* 모금 과정에서의 모금가·기부자·기부대상자의 권리 보호 기반 마련
* 모금윤리에 관한 국제성명[[1]](#footnote-1)에 의거한 활동 준수

1. **추진 내용 및 절차**
2. 추진 주체: 팀 구성(운영위원회 1인, 사무국 활동가 1인, 모금전문가1인)
3. 윤리 규정 제정 절차
4. 모금 사업 현황 분석

* 이해관계자 Focus Group Interview
* 온·오프라인 소통 창구 마련을 통한 의견 수집
*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 현황 분석

1. 추진 팀 가안 제작
2. 재평가

* 총회 및 온·오프라인 공유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공유
* 전문가 컨설팅

1. 최종안 제정

* 총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 위임 통한 최종안 제정
* 홈페이지 게재

1. 평가

* 연간 운영위원회 및 회원 모금 활동 평가
* 이를 기반으로 한 윤리강령 재평가 후 수정

1. 윤리 규정 내용 예[[2]](#footnote-2)

* 난민인권센터의 의무, 기부자 권리, 기부금수용정책 등

1. **추진 일정**

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2014.04 | 2014.05 | 2014.06 | 2014.07. | 2015.04 |
| 사업 안 통과 |  |  |  |  |  |
| 현황분석 |  |  |  |  |  |
| 가안제작 |  |  |  |  |  |
| 재평가 |  |  |  |  |  |
| 최종안 제정 |  |  |  |  |  |
| 재평가 |  |  |  |  |  |

1. **모금윤리에 관한 국제성명**(International Statement of Ethical Principles in Fundraising,2006.12.7): 전 세계의 모금 관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모금의 책무성, 투명성을 강조하여 모금윤리에 관한 국제성명을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금윤리를 제시함. [↑](#footnote-ref-1)
2. **난민인권센터 모금 윤리 규정 (예시)**

   난민인권센터는 기금을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정직, 존중, 성실, 공감, 투명의 윤리가치를 기반으로 다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.

   1. **난민인권센터의 의무**
   * 난민인권센터의 모금활동은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야 하며,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.
   * 난민인권센터의 모금가는 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과 자존심을 지켜야만 한다. 그러기 위해 난민의 권리와 자존심을 낮추는 모금 수단이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   * 난민인권센터의 기부금은 기부자와 약속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불가피하게 용도를 전환할 경우 반드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  1. **기부자의 권리**
   * 난민인권센터의 기부자는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단체의 이름, 신분, 미션, 그리고 목적이 난민인권센터의 웹사이트에 처음 접근 했을 때 통보 받을 수 있어야 한다.
   * 기부자의 기부는 세금공제를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, 해당 법률에 따라 이러한 공제에 대한 모든 제한의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다.
   1. **기부금 수용 정책**

   난민인권센터는 난민인권센터의 사명 및 목적에 일치하고, 사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기부금을 수용한다.

   단 아래의 경우 난민인권센터는 기부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   * 1. 기부금의 목적이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
     2. 난민인권센터의 회칙이나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

   [↑](#footnote-ref-2)